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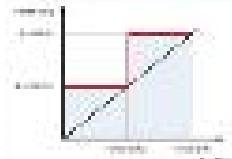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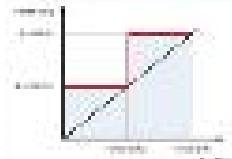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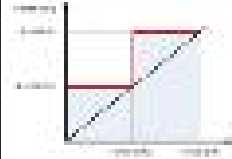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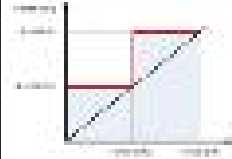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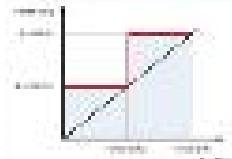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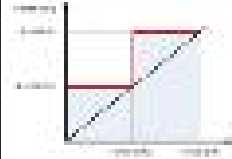
2025. 07.



국 토 교 통 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
(주기보완 및 기준 명시 등)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신호수, 유도자 계상의무 명시	1-2-5 인력('22, '23, '25년 보완) 3. 신호수 등 공사 중 안전을 위해 배치되는 각종 신호수, 감시자 등의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 해당 법령(규정, 지침, 규칙 등)에서 규정하는 인력 및 설계자의 판단(현장여건 및 조건 등 고려) 에 의해 필요한 인력은 별도 계상한다.	1-2-5 인력 3. 공사 중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령,규칙,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공통] 1장 적용 기준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신호수, 유도자 계상의무 명시	1-1 공통사항 1-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08년 신설, '17, '23년 보완) • 도로의 확포장, 도로시설 유지보수 등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계상한다.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	1-1 공통사항 1-1-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령,규칙,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해 라바콘, 공사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특별인부 2인을 계상하고, 차량 등 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계상한다.	[토목] 1장 도로 포장 공사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신호수, 유도자 계상의무 명시	6-1 공통사항 6-1-1 적용기준 및 범위('18년 신설, '23, '25년 보완) 1~4. - 생략 - 5.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를 위한 인력은 제외되어 있으며, 필요시 배치인원은 현장조건(교통상황, 통제시간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별도계상한다. 6~9. - 생략 -	6-1 공통사항 6-1-1 적용기준 및 범위 1~4. - 생략 - 5. 공사 시공 과정에서 안전의 확보를 위해 해당 법령(법,령,규칙,지침 등)에 따라 배치하는 신호수, 유도자, 교통정리원, 감시자 및 기타 안전확보를 위한 인력은 품셈의 각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작업방법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을 별도 계상한다. 6~9. - 생략 -	[토목] 6장 관부설 및 접합 공사

구분	현	행	개	정(안)	비고																																																																																								
1. 항목유형	1-4 품의 할증		1-2 설계 및 수량		[공통] 1장 적용 기준																																																																																								
- 신설(항목분리)	1-4-6 작업제한('23, 24년 보완)		1-2-9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2. 개정내용	2.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시공량/일"이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인력, 장비)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재료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인 소규모 공사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시공량/일"이 제시되지 않는 항목의 경우 시공수량과 투입자원(인력, 장비)의 작업능력을 고려하여 산정한다.(재료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소규모 적용예시 명시	<table><tr><th>구 분</th><th>조 건</th><th>적용시공량</th><th></th></tr><tr><td>1</td><td>A ≤ B/2 일 경우</td><td>Q = B/2</td><td rowspan="2"></td></tr><tr><td>2</td><td>B/2 < A ≤ B 일 경우</td><td>Q = B</td></tr></table> [주] 시공량(A), 1일시공량(표준품셈)(B), 적용시공량(Q) ※ 시공량(A)은 일반적으로 총 시공량을 적용한다. 다만, 외부환경(교통통제 및 발주물량 제한으로 "시공량/일"이 제한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시공량/일" 미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시공량으로 적용한다.		구 분	조 건	적용시공량		1	A ≤ B/2 일 경우	Q = B/2		2	B/2 < A ≤ B 일 경우	Q = B	<table><tr><th>구 분</th><th>조 건</th><th>적용시공량</th><th></th></tr><tr><td>1</td><td>A ≤ B/2 일 경우</td><td>Q = B/2</td><td rowspan="2"></td></tr><tr><td>2</td><td>B/2 < A < B 일 경우</td><td>Q = B</td></tr></table> [주] ① 시공량(A), 1일시공량(표준품셈)(B), 적용시공량(Q) ② 시공량은 총 시공량을 기준한다. 단, 외부환경(교통통제 및 발주물량 제한으로 "시공량/일"이 제한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시공량/일" 미만으로 계획되는 경우 해당 시공량을 적용한다. ③ 동일 항목내 다수의 규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현장조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 규격별 소요일수를 산정 : 시공량 ÷ 표준품셈 일당시공량 ㉡ 규격별 소요일수의 합이 1일 미만일 경우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적용 ㉢ 규격별 소요일수의 합이 1일 이상일 경우 소규모(작업물량 제한) 미적용 ㉣ 규격별 시공량에 일수편차에 따른 효율을 각각 곱하여 시공량 계산 <table><tr><th>구 분</th><th>규 격</th><th>A.시공량 (m)</th><th>B.1일시공량 (m)</th><th>Q. 적용시공량 (m)</th><th>소요일수 (A/B)</th><th>일수편 차 (요율)</th></tr><tr><td rowspan="7">소규모 적용</td><td rowspan="3">예시 1</td><td>15mm</td><td>40</td><td>83</td><td>44</td><td>0.5</td></tr><tr><td>20mm</td><td>30</td><td>75</td><td>33</td><td>0.4</td></tr><tr><td>계</td><td>70</td><td></td><td>77</td><td>0.9</td></tr><tr><td rowspan="4">예시 2</td><td>15mm</td><td>10</td><td>83</td><td>12</td><td>0.1</td></tr><tr><td>20mm</td><td>15</td><td>75</td><td>18</td><td>0.2</td></tr><tr><td>100mm</td><td>9</td><td>18</td><td>10.8</td><td>0.5</td></tr><tr><td>계</td><td>34</td><td></td><td>40.8</td><td>0.8</td></tr><tr><td rowspan="4">소규모 미적용</td><td rowspan="4">예시 3</td><td>15mm</td><td>30</td><td>83</td><td></td><td>0.4</td></tr><tr><td>20mm</td><td>15</td><td>75</td><td></td><td>0.2</td></tr><tr><td>100mm</td><td>10</td><td>18</td><td></td><td>0.6</td></tr><tr><td>계</td><td>55</td><td></td><td></td><td>1.2</td></tr></table> ④ 복합 공종 시공 시에는 본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 분	조 건	적용시공량		1	A ≤ B/2 일 경우	Q = B/2		2	B/2 < A < B 일 경우	Q = B	구 분	규 격	A.시공량 (m)	B.1일시공량 (m)	Q. 적용시공량 (m)	소요일수 (A/B)	일수편 차 (요율)	소규모 적용	예시 1	15mm	40	83	44	0.5	20mm	30	75	33	0.4	계	70		77	0.9	예시 2	15mm	10	83	12	0.1	20mm	15	75	18	0.2	100mm	9	18	10.8	0.5	계	34		40.8	0.8	소규모 미적용	예시 3	15mm	30	83		0.4	20mm	15	75		0.2	100mm	10	18		0.6	계	55			1.2
구 분	조 건	적용시공량																																																																																											
1	A ≤ B/2 일 경우	Q = B/2																																																																																											
2	B/2 < A ≤ B 일 경우	Q = B																																																																																											
구 분	조 건	적용시공량																																																																																											
1	A ≤ B/2 일 경우	Q = B/2																																																																																											
2	B/2 < A < B 일 경우	Q = B																																																																																											
구 분	규 격	A.시공량 (m)	B.1일시공량 (m)	Q. 적용시공량 (m)	소요일수 (A/B)	일수편 차 (요율)																																																																																							
소규모 적용	예시 1	15mm	40	83	44	0.5																																																																																							
		20mm	30	75	33	0.4																																																																																							
		계	70		77	0.9																																																																																							
	예시 2	15mm	10	83	12	0.1																																																																																							
		20mm	15	75	18	0.2																																																																																							
		100mm	9	18	10.8	0.5																																																																																							
		계	34		40.8	0.8																																																																																							
소규모 미적용	예시 3	15mm	30	83		0.4																																																																																							
		20mm	15	75		0.2																																																																																							
		100mm	10	18		0.6																																																																																							
		계	55			1.2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1-4-1 적용기준('23년 보완)	1-4-1 적용기준	[공통]																										
2. 개정내용 - 할증 적용기준 명시	1.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2. 할증의 적용은 품셈 각 항목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작업환경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며, 항목별로 별도의 할증이 명시된 경우에는 각 항목별 할증을 우선 적용한다. 3.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품의 할증은 각각의 할증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공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할증의 적용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할증율(%)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할증율의 범위내에서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품의 할증은 필요한 경우 다음의 기준 이내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공사규모, 현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한다. 2. 할증의 적용은 품셈 각 항목에서 반영하고 있는 작업조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 고려되어야 하며, 해당 항목에서 규격 또는 별도의 할증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조건을 우선 적용한다. 3. 품의 할증은 생산성에 영향을 받는 품 요소(인력 및 건설기계)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품의 할증은 각각의 할증 요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공조건에서 적용할 수 있으며, 할증의 적용에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의 장 또는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5. 할증율(%)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할증율의 범위내에서 보완하여 적용한다.	1장 적용 기준																										
1. 항목유형 - 보완	8-2-13 대형브레이커('14, '17, '25년 보완)	8-2-13 대형브레이커	[공통]																										
2. 개정내용 - 도심지 할증 적용 기준 명시	2. 작업능력 가. 구조물 헐기 - 본 품 생략 - [주] ① 본 품은 도로(콘크리트, 아스콘), 하천, 해안 사방공사의 기설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헐기품이다. ② 터파기, 되메우기, 파쇄물 집적 및 소운반, 싣기 및 운반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③ 작업보조로서 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한다. ④ 철근절단 및 절단기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⑤ 굴착기 0.4㎥을 조합 사용하는 경우는 상기 작업능력의 하한치를 적용한다. (아스콘 포장 제외) ⑥ 인구 밀집지역의 소규모 지선도로 포장깨기에는 0.2㎥ 굴착기를 조합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작업능력은 1.75㎥/hr를 적용한다.(아스콘 포장 제외) ⑦ 굴착기(0.4㎥ 이하)로 아스콘 포장 깨기를 하는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 rowspan="2">굴착기 + 브레이커</td><td>0.4㎥</td><td>㎥/hr</td><td>6.9</td><td rowspan="2">두께 20cm이하</td></tr><tr><td>0.2㎥</td><td>㎥/hr</td><td>4.1</td></tr></table>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굴착기 + 브레이커	0.4㎥	㎥/hr	6.9	두께 20cm이하	0.2㎥	㎥/hr	4.1	2. 작업능력 가. 구조물 헐기 - 본 품 생략 - [주] ① 본 품은 도로(콘크리트, 아스콘), 하천, 해안 사방공사의 기설 콘크리트 및 구조물의 헐기품이다. ② 터파기, 되메우기, 파쇄물 집적 및 소운반, 싣기 및 운반 등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계상한다. ③ 작업보조로서 보통인부 1인을 별도 계상한다. ④ 철근절단 및 절단기 손료는 별도 계상한다. ⑤ 굴착기 0.4㎥을 조합 사용하는 경우는 상기 작업능력의 하한치를 적용한다. (아스콘 포장 제외) ⑥ 인구 밀집지역의 소규모 지선도로 포장깨기에는 0.2㎥ 굴착기를 조합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의 작업능력은 1.75㎥/hr를 적용한다.(아스콘 포장 제외) ⑦ 굴착기(0.4㎥ 이하)로 아스콘 포장 깨기를 하는 경우 다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비고</th></tr><tr><td rowspan="2">굴착기 + 브레이커</td><td>0.4㎥</td><td>㎥/hr</td><td>6.9</td><td rowspan="2">두께 20cm이하</td></tr><tr><td>0.2㎥</td><td>㎥/hr</td><td>4.1</td></tr></table> ※ 주⑥,⑦ 에는 ‘[공통]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굴착기 + 브레이커	0.4㎥	㎥/hr	6.9	두께 20cm이하	0.2㎥	㎥/hr	4.1	8장 건설 기계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굴착기 + 브레이커	0.4㎥	㎥/hr	6.9	두께 20cm이하																									
	0.2㎥	㎥/hr	4.1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비고																									
굴착기 + 브레이커	0.4㎥	㎥/hr	6.9	두께 20cm이하																									
	0.2㎥	㎥/hr	4.1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6-1-1 적용기준 및 범위('18년 신설, '23, '25년 보완)	6-1-1 적용기준 및 범위	[토목] 6장 관부설 및 접합 공사																																				
2. 개정내용 - 도심지 할증 적용 기준 명시	1~7, 9. - 생략 - 8.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토공사(굴착 및 복구공사 등)에 영향을 받아 시공되는 기준으로 현장의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인력 및 장비 품에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요율은 관부설 및 접합(강관도장 포함)에 적용한다.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내용</th><th colspan="2">요율</th></tr><tr><th>품</th><th>시공량</th></tr><tr><td>시공조건 A</td><td>-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통행제한, 지장물(매립물 등)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하여 굴착과 관부설 및 접합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시공하는 경우</td><td>-</td><td>-</td></tr><tr><td>시공조건 B</td><td>-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굴착 작업이 분리 선행되어 부설 및 접합을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경우</td><td>75%</td><td>133%</td></tr><tr><td>시공조건 C</td><td>- 굴착 및 복구공사의 영향없이 시공하는 현장 - 선행작업(굴착공사 또는 기초공사)이 완료된 상태의 개착구간으로 부설 및 접합을 단독으로 시공하는 경우</td><td>50%</td><td>200%</td></tr></table>	구분	내용	요율		품	시공량	시공조건 A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통행제한, 지장물(매립물 등)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하여 굴착과 관부설 및 접합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	시공조건 B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굴착 작업이 분리 선행되어 부설 및 접합을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75%	133%	시공조건 C	- 굴착 및 복구공사의 영향없이 시공하는 현장 - 선행작업(굴착공사 또는 기초공사)이 완료된 상태의 개착구간으로 부설 및 접합을 단독으로 시공하는 경우	50%	200%	1~7, 9. - 생략 - 8. 관부설 및 접합공사는 토공사(굴착 및 복구공사 등)에 영향을 받아 시공되는 기준으로 현장의 시공조건을 고려하여 인력 및 장비 품에 다음과 같이 요율을 적용할 수 있다. 본 요율은 관부설 및 접합(강관도장 포함)에 적용한다.([공통] 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내용</th><th colspan="2">요율</th></tr><tr><th>품</th><th>시공량</th></tr><tr><td>시공조건 A</td><td>-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통행제한, 지장물(매립물 등)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하여 굴착과 관부설 및 접합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시공하는 경우</td><td>-</td><td>-</td></tr><tr><td>시공조건 B</td><td>-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굴착 작업이 분리 선행되어 부설 및 접합을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경우</td><td>75%</td><td>133%</td></tr><tr><td>시공조건 C</td><td>- 굴착 및 복구공사의 영향없이 시공하는 현장 - 선행작업(굴착공사 또는 기초공사)이 완료된 상태의 개착구간으로 부설 및 접합을 단독으로 시공하는 경우</td><td>50%</td><td>200%</td></tr></table>	구분	내용	요율		품	시공량	시공조건 A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통행제한, 지장물(매립물 등)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하여 굴착과 관부설 및 접합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	시공조건 B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굴착 작업이 분리 선행되어 부설 및 접합을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75%	133%	시공조건 C	- 굴착 및 복구공사의 영향없이 시공하는 현장 - 선행작업(굴착공사 또는 기초공사)이 완료된 상태의 개착구간으로 부설 및 접합을 단독으로 시공하는 경우	50%	200%	
구분	내용			요율																																			
		품	시공량																																				
시공조건 A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통행제한, 지장물(매립물 등)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하여 굴착과 관부설 및 접합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																																				
시공조건 B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굴착 작업이 분리 선행되어 부설 및 접합을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75%	133%																																				
시공조건 C	- 굴착 및 복구공사의 영향없이 시공하는 현장 - 선행작업(굴착공사 또는 기초공사)이 완료된 상태의 개착구간으로 부설 및 접합을 단독으로 시공하는 경우	50%	200%																																				
구분	내용	요율																																					
		품	시공량																																				
시공조건 A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통행제한, 지장물(매립물 등) 등으로 인해 연속적인 굴착이 불가능하여 굴착과 관부설 및 접합을 병행하여 반복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	-																																				
시공조건 B	- 당일 굴착 및 복구공사에 영향을 받으며 시공하는 현장 - 굴착 작업이 분리 선행되어 부설 및 접합을 연속적으로 시공하는 경우	75%	133%																																				
시공조건 C	- 굴착 및 복구공사의 영향없이 시공하는 현장 - 선행작업(굴착공사 또는 기초공사)이 완료된 상태의 개착구간으로 부설 및 접합을 단독으로 시공하는 경우	50%	200%																																				
1. 항목유형 - 보완	2-1-3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1회 포장)('20, '24년 보완) - 본 품 생략 -	2-1-3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1회 포장) - 본 품 생략 -	[유지 관리] 2장 토목																																				
2. 개정내용 - 도심지 할증 적용 기준 명시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70mm이하, 1회) 후 아스팔트로 1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table><tr><th>구분</th><th>적용기준</th></tr><tr><td>A Type</td><td>-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 연결되어 있는 경우</td></tr><tr><td>B Type</td><td>-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필요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td></tr><tr><td>C Type</td><td>-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작업위치 이동을 위한 장비의 발생되는 경우</td></tr></table> ④ 절삭시 1㎡당 팀(날)을 0.69개 계상한다.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구분	적용기준	A Type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 연결되어 있는 경우	B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필요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C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작업위치 이동을 위한 장비의 발생되는 경우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70mm이하, 1회) 후 아스팔트로 1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공통]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 <table><tr><th>구분</th><th>적용기준</th></tr><tr><td>A Type</td><td>-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 연결되어 있는 경우</td></tr><tr><td>B Type</td><td>-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필요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td></tr><tr><td>C Type</td><td>-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작업위치 이동을 위한 장비의 발생되는 경우</td></tr></table> ④ 절삭시 1㎡당 팀(날)을 0.69개 계상한다.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구분	적용기준	A Type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 연결되어 있는 경우	B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필요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C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작업위치 이동을 위한 장비의 발생되는 경우																					
구분	적용기준																																						
A Type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 연결되어 있는 경우																																						
B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필요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C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작업위치 이동을 위한 장비의 발생되는 경우																																						
구분	적용기준																																						
A Type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 연결되어 있는 경우																																						
B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필요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C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작업위치 이동을 위한 장비의 발생되는 경우																																						

구분	현행	개 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1-4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2회 포장)('24년 신설)	2-1-4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1회 절삭, 2회 포장)	[유지 관리] 2장 토목												
2. 개정내용 － 도심지 할증 적용 기준 명시	－ 본 품 생 략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100mm, 1회) 후 아스팔트로 동일 구간을 2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 <table><tr><th>구 분</th><th>적 용 기 준</th></tr><tr><td>A Type</td><td>－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td></tr><tr><td>B Type</td><td>－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td></tr></table>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A Type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B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 본 품 생 략 －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면을 대형장비로 절삭(밀링깊이 100mm, 1회) 후 아스팔트로 동일 구간을 2회 재포장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포장 절삭, 유제살포, 포장 및 다짐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표를 기준한다.(['공통]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table><tr><th>구 분</th><th>적 용 기 준</th></tr><tr><td>A Type</td><td>－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td></tr><tr><td>B Type</td><td>－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td></tr></table> ④ 절삭시 1㎡당 팁(날)을 0.69개 계상한다. ⑤ 작업시 공사 시방에 따라 장비 조합을 변경할 수 있다. ⑥ 본 품외의 장비(아스팔트온도조절장비, 진공청소차 등)를 추가 투입하는 경우에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구 분	적 용 기 준	A Type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B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구 분	적 용 기 준														
A Type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B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구 분	적 용 기 준														
A Type	－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평면교차로가 없는 일반도로 등과 같이 시공구간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B Type	－ 평면교차로 등으로 인해 시공구간이 단절되어 일시적인 장비의 이동이 발생하되, 이동을 위한 장비의 운반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1. 항목유형 － 보완	2-1-12 차선도색('08, '14, '16, '17, '20, '25년 보완)	2-1-12 차선도색	[유지 관리] 2장 토목												
2. 개정내용 － 도심지 할증 적용 기준 명시	－ 본 품 생 략 －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밀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먹줄치기, 밀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토목]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본 품 생 략 － [주] ① 본 품은 차선도색을 위한 사전 밀그림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본 품은 먹줄치기, 밀그림 도색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토목]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 본 품 생략 - [주] ① 본 품은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토목]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⑨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⑩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2. 수용성형 페인트 수동식 - 본 품 생략 - [주] ① 본 품은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합중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토목]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⑨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⑩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유지 관리] 2장 토목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 본 품 생략 - [주] ① 본 품은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토목]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⑨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3. 수용성형 페인트 기계식 - 본 품 생략 - [주] ① 본 품은 라인마커 트럭을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합중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토목]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⑨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4. 용착식 도로 수동식 - 본 품 생략 - [주] ① 본 품은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도로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table><tr><th>구분</th><th>4.5ton</th><th>2.5ton</th></tr><tr><td>작업</td><td>용해기 운반</td><td>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td></tr></table>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⑨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⑩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10㎡당) <table><tr><th>구분</th><th>단위</th><th>수량</th></tr><tr><td>프라이머</td><td>kg</td><td>2.0</td></tr><tr><td>프로판가스</td><td>kg</td><td>2.0</td></tr></table>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구분	4.5ton	2.5ton	작업	용해기 운반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구분	단위	수량	프라이머	kg	2.0	프로판가스	kg	2.0	4. 용착식 도로 수동식 - 본 품 생략 - [주] ① 본 품은 핸드가이드식 라인마커를 사용한 작업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본 품은 도로배합,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다음의 작업에 적용한다. <table><tr><th>구분</th><th>4.5ton</th><th>2.5ton</th></tr><tr><td>작업</td><td>용해기 운반</td><td>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td></tr></table> ⑤ 차량우회 및 신호를 위한 인력 및 장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⑥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⑦ 운행도로의 노면표시 보수공사에서 차량 전면통제 등으로 작업의 제약이 없이 시공이 가능한 구간은 ‘1-8-9 차선도색’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⑧ 공구손료 및 경장비(라인마커, 용해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10%로 계상한다. ⑨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⑩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하고, 기타 자재의 수량은 다음을 참고한다. (10㎡당) <table><tr><th>구분</th><th>단위</th><th>수량</th></tr><tr><td>프라이머</td><td>kg</td><td>2.0</td></tr><tr><td>프로판가스</td><td>kg</td><td>2.0</td></tr></table> ※ 위 재료량은 할증이 포함되어 있다.	구분	4.5ton	2.5ton	작업	용해기 운반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구분	단위	수량	프라이머	kg	2.0	프로판가스	kg	2.0	[유지관리] 2장 토목
구분	4.5ton	2.5ton																															
작업	용해기 운반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구분	단위	수량																															
프라이머	kg	2.0																															
프로판가스	kg	2.0																															
구분	4.5ton	2.5ton																															
작업	용해기 운반	자재, 공구 및 경장비 운반																															
구분	단위	수량																															
프라이머	kg	2.0																															
프로판가스	kg	2.0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로 구동식 - 본 품 생략 - [주] ① 본 품은 라인마커(탑승형)를 사용한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로를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고, 라인마커의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⑧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로 구동식 - 본 품 생략 - [주] ① 본 품은 라인마커(탑승형)를 사용한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로를 차선도색 기준이다. ② 운행도로 또는 확장공사 등의 노면표시 공사에서 차량의 부분 통제, 신호간섭 등으로 시공에 지장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공통]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본 품은 차선도색, 유리알 살포 작업을 포함한다. ④ 트럭은 자재, 공구 및 경장비의 현장내 운반 작업에 적용한다. ⑤ 사전 청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핸드믹서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2%로 계상하고, 라인마커의 기계경비는 별도계상한다. ⑦ 잡재료 및 소모재료는 주재료비의 1%로 계상한다. ⑧ 페인트 재료량 및 유리알 살포량은 별도 계상한다.																															

구분	현행							개 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1-24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21, '24년 보완)							2-1-24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유지관리] 2장 토목		
	(일당)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A-Type		B-Type		구 분		규격	단 위	A-Type			B-Type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인	2	360	2	260	포 장 공 보 통 인 부			인	2	360		2	260
트 력		2.5ton	대	1	1		트 력		2.5ton	대	1	1					
2. 개정내용 - 상차작업 포함여부 명시 - 도심지 할증 적용 기준 명시	[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 ① 본 품은 유용할 목적으로 철거하거나 또는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간의 철거 작업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공통]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적용기준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1. 항목유형 - 보완	2-1-25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21년 신설, '24년 보완)							2-1-25 보도용 블록 장비사용 철거							[유지관리] 2장 토목		
	(일당)							(일당)									
	구 분		규격	단 위	A-Type		B-Type		구 분		규격	단 위	A-Type			B-Type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수량	시공량 (㎡)
	포 장 공 보 통 인 부			인	1	600	1	460	포 장 공 보 통 인 부			인	1	600		1	460
굴 착 기		0.4㎡	대	1	-		굴 착 기		0.4㎡	대	1	-					
굴 착 기		0.2㎡	대	-	1		굴 착 기		0.2㎡	대	-	1					
트 력		2.5ton	대	1	1		트 력		2.5ton	대	1	1					
2. 개정내용 - 상차작업 포함여부 명시 - 도심지 할증 적용 기준 명시	[주] ① 본 품은 장비를 사용하여 보도용 블록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 ① 본 품은 장비를 사용하여 보도용 블록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공통]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분		적용기준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④ 폐기물처리는 별도 계상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상차작업 포함여부 명시 - 도심지 할증 적용 기준 명시	2-1-29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21년 신설, '24년 보완) (일당)						2-1-29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일당)						[유지관리] 2장 토목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규격 (아래폭+높이mm)	시공량 (m)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규격 (아래폭+높이mm)	시공량 (m)				
	A-Type	특별인부		인	2	300미만	500	A-Type	특별인부		인	2		300미만	500				
		보통인부		인	1	350미만	420		A-Type	보통인부		인		1	350미만	420			
		굴착기 트럭	0.4m'	대	1	400미만	390			굴착기 트럭	0.4m'	대		1	400미만	390			
			2.5ton	대	1	500미만	270				굴착기 트럭	2.5ton		대	1	500미만	270		
	B-Type	특별인부		인	2	500이상	170	B-Type		특별인부				인	2	500이상	170		
		보통인부		인	1	300미만	400		B-Type	보통인부		인		1	300미만	400			
		굴착기 트럭	0.2m'	대	1	350미만	335			굴착기 트럭	0.2m'	대		1	350미만	335			
			2.5ton	대	1	400미만	310				굴착기 트럭	2.5ton		대	1	400미만	310		
		특별인부		인	2	500미만	215			특별인부				인	2	500미만	215		
		보통인부		인	1	500미만	130			보통인부		인		1	500미만	130			
		굴착기 트럭	0.2m'	대	1	500미만	215			굴착기 트럭	0.2m'	대		1	500미만	215			
			2.5ton	대	1	500이상	130				굴착기 트럭	2.5ton		대	1	500이상	130		
	[주] ① 본 품은 장비를 사용하여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지관리] 2장 토목					
[주] ① 본 품은 장비를 사용하여 화강암 및 콘크리트 경계블록을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블록 철거, 블록상차 , 현장정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현장 여건별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다.([공통]1-4-4 지세/지형 2.도심지'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table><tr><th>구분</th><th>적용기준</th></tr><tr><td>A-Type</td><td>-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td></tr><tr><td>B-Type</td><td>-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td></tr></table>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구분	적용기준																		
A-Type	- 공원, 단지·택지조성공사의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가 용이한 구간																		
B-Type	- 차도인접, 주택가 보도 등 장비이동 및 적재 공간이 협소한 구간																		
④ 콘크리트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폐기물처리하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④ 콘크리트 절단 및 깨기, 터파기 및 되메우기, 잔토처리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⑤ 폐기물처리하는 별도 계상한다.																			
⑥ 장비의 종류 및 규격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형틀목공 계상기준 명시	6-1 콘크리트('25년 보완) ◦ 콘크리트량이 많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레미콘은 그 경제성 및 품질을 현장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본 품에서 타설 시 수행하는 양생준비 작업은 포함하고 있으며, 타설 이후 살수 양생을 하는 경우 특별인부를 추가 계상한다.	6-1 콘크리트('25년 보완) ◦ 콘크리트량이 많거나 소량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배합설계를 하여야 한다. ◦ 레미콘은 그 경제성 및 품질을 현장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사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및 동바리의 변형·변위 침하 발생에 따른 거푸집 작업 등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틀목공을 추가 계상한다. ◦ 본 품에서 타설 시 수행하는 양생준비 작업은 포함하고 있으며, 타설 이후 살수 양생을 하는 경우 특별인부를 추가 계상한다.	[공통] 6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08, '09, '17, '22, '24년 보완)	6-1-4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공통]																																																											
2. 개정내용 - 타설 시 발생하는 소모재료 성격 물량 반영 계상기준 명시 - 형틀목공 계상기준 명시	1. 적용범위 가. 본 품은 콘크리트펌프차(80m ³ /hr 이상)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에 적용한다. 나. 펌프차 타설은 단일 구조물의 일일 타설(1회 셋팅 및 마감)을 기준으로 하며, 일 작업시간 내에 인접되어 있는 두개 이상의 구조물을 연속하여 타설할 경우 타설량을 합산하여 계상한다. 다. 본 품은 펌프차를 활용한 타설, 다짐, 양생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라. 타설 횟수는 설계(시공단계에 따른 타설 위치) 및 시공조건(일 작업시간, 시공이음, 1회 가능 타설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마. 타설 후 별도의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바.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배관타설은 붐 타설이 곤란한 경우, 혹은 현장조건 등에 따라 배관타설이 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며, 배관의 설치 및 철거는 '4.압송관 설치 및 철거'를 따른다. 사.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아. 소모재료(양생제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2. 인력편성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단위</th><th colspan="2">작업조</th><th rowspan="2">비고</th></tr><tr><th>무근콘크리트</th><th>철근콘크리트</th></tr><tr><td>콘크리트공</td><td>인</td><td>3</td><td>4</td><td>타설/진동기/면정리</td></tr><tr><td>특별인부</td><td>인</td><td>2</td><td>2</td><td>배관타설 : 1인 추가</td></tr><tr><td>보통인부</td><td>인</td><td>1</td><td>1</td><td>현장정리/보조</td></tr><tr><td>콘크리트펌프차</td><td>대</td><td colspan="2">1대(80m³/hr 이상)</td><td>시공조건에 따른 규격 선정</td></tr></table> [주] ① 본 편성인력은 콘크리트 진동기 사용 기준으로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공과 특별인부를 각 1인 제외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편성인력 노무비의 5%를 적용한다.	구분	단위	작업조		비고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공	인	3	4	타설/진동기/면정리	특별인부	인	2	2	배관타설 : 1인 추가	보통인부	인	1	1	현장정리/보조	콘크리트펌프차	대	1대(80m ³ /hr 이상)		시공조건에 따른 규격 선정	1. 적용범위 가. 본 품은 콘크리트펌프차(80m ³ /hr 이상)를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에 적용한다. 나. 펌프차 타설은 단일 구조물의 일일 타설(1회 셋팅 및 마감)을 기준으로 하며, 일 작업시간 내에 인접되어 있는 두개 이상의 구조물을 연속하여 타설할 경우 타설량을 합산하여 계상한다. 다. 본 품은 펌프차를 활용한 타설, 다짐, 양생준비 작업을 포함한다. 라. 타설 횟수는 설계(시공단계에 따른 타설 위치) 및 시공조건(일 작업시간, 시공이음, 1회 가능 타설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마. 타설 후 별도의 표면 마무리가 필요한 경우 ‘[공통부문] 6-1-3 표면 마무리’를 따른다. 바. 콘크리트 펌프차 규격은 타설높이 및 수평거리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배관타설은 붐 타설이 곤란한 경우, 혹은 현장조건 등에 따라 배관타설이 적당한 경우에 적용하며, 배관의 설치 및 철거는 '4.압송관 설치 및 철거'를 따른다. 사. 양생은 양생방법 및 시간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한다. 아. 소모재료(양생제 등)가 필요한 경우 별도 계상한다. 2. 인력편성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단위</th><th colspan="2">작업조</th><th rowspan="2">비고</th></tr><tr><th>무근콘크리트</th><th>철근콘크리트</th></tr><tr><td>콘크리트공</td><td>인</td><td>3</td><td>4</td><td>타설/진동기/면정리</td></tr><tr><td>특별인부</td><td>인</td><td>1</td><td>1</td><td>배관타설 : 1인 추가</td></tr><tr><td>형틀목공</td><td>인</td><td>1</td><td>1</td><td>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td></tr><tr><td>보통인부</td><td>인</td><td>1</td><td>1</td><td>현장정리/보조</td></tr><tr><td>콘크리트펌프차</td><td>대</td><td colspan="2">1대(80m³/hr 이상)</td><td>시공조건에 따른 규격 선정</td></tr></table> [주] ① 본 편성인력은 콘크리트 진동기 사용 기준으로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콘크리트공과 특별인부를 각 1인 제외한다. ② 공구손료 및 경장비(콘크리트 진동기 등)의 기계경비는 편성인력 노무비의 5%를 적용한다. ③ 타설 후 발생하는 잔여 콘크리트(배관 내 잔여물 등)의 재료비는 편성인력 노무비의 5%를 계상한다.	구분	단위	작업조		비고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공	인	3	4	타설/진동기/면정리	특별인부	인	1	1	배관타설 : 1인 추가	형틀목공	인	1	1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보통인부	인	1	1	현장정리/보조	콘크리트펌프차	대	1대(80m ³ /hr 이상)		시공조건에 따른 규격 선정	6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구분	단위			작업조			비고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공	인	3	4	타설/진동기/면정리																																																										
특별인부	인	2	2	배관타설 : 1인 추가																																																										
보통인부	인	1	1	현장정리/보조																																																										
콘크리트펌프차	대	1대(80m ³ /hr 이상)		시공조건에 따른 규격 선정																																																										
구분	단위	작업조		비고																																																										
		무근콘크리트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공	인	3	4	타설/진동기/면정리																																																										
특별인부	인	1	1	배관타설 : 1인 추가																																																										
형틀목공	인	1	1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보통인부	인	1	1	현장정리/보조																																																										
콘크리트펌프차	대	1대(80m ³ /hr 이상)		시공조건에 따른 규격 선정																																																										

－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
(현장조사 등 보완 및 신설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신설	- 항목 신설 -	4-3-2 기초앵커 설치 (개당) <table><tr><th>구분</th><th>단위</th><th>수량</th></tr><tr><td>철공</td><td>인</td><td>0.015</td></tr><tr><td>보통인부</td><td>인</td><td>0.009</td></tr></table>	구분	단위	수량	철공	인	0.015	보통인부	인	0.009	[건축] 4장 목공사					
구분		단위	수량														
철공		인	0.015														
보통인부		인	0.009														
2. 개정내용 - 기초앵커 설치 기준 신설	[주] ① 본 품은 목재테크 등 하부기초(콘크리트)에 앵커(D13mm이하)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먹매김, 구멍뚫기, 기초앵커 설치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 항목유형 - 신설	- 항목 신설 -	4-1-2 관형잔디붙임 (일당) <table><tr><th>구분</th><th>단위</th><th>수량</th><th>시공량(㎡)</th></tr><tr><td>조경공</td><td>인</td><td>1</td><td rowspan="3">185</td></tr><tr><td>보통인부</td><td>인</td><td>3</td></tr><tr><td>굴착기</td><td>대</td><td>0.5</td></tr></table>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조경공	인	1	185	보통인부	인	3	굴착기	대	0.5	[공통] 4장 조경 공사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조경공		인	1	185													
보통인부		인	3														
굴착기	대	0.5															
2. 개정내용 - 관형잔디 붙임 기준 추가 반영	[주] ① 본 품은 관형잔디(0.2~0.5㎡)를 붙이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흙파기, 땃밭주기, 물주기 및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③ 식재 시 1회 기준의 물주기는 포함되어 있으며, 유지관리는 ‘[유지관리부문] 1-2 조경공사’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④ 물주기를 위해 살수차 등의 장비가 필요한 경우 기계경비는 별도 계상한다.																
1. 항목유형 - 신설	4-4 조경구조물 - 항목 신설 -	4-4 조경시설물 4-4-5 녹지경계분리재 설치 (일당) <table><tr><th>구분</th><th>단위</th><th>수량</th><th>시공량(m)</th></tr><tr><td>조경공</td><td>인</td><td>2</td><td rowspan="2">50</td></tr><tr><td>보통인부</td><td>인</td><td>1</td></tr></table>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m)	조경공	인	2	50	보통인부	인	1	[공통] 4장 조경 공사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m)													
조경공		인	2	50													
보통인부		인	1														
2. 개정내용 - 조경경계엣지 설치 기준 신설	[주] ① 본 품은 공원, 녹지 등 경계부위에 분리재를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바탕면정리 및 먹매김, 분리대 절단 및 설치, 앵커 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③ 터파기, 되메우기, 다짐 등 토공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공구손료 및 경장비(드릴, 절단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신설	- 항목 신설 -	5-1-6 복공판 설치·철거 (일당)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단위</th><th rowspan="2">수량</th><th colspan="2">시공량(㎡)</th></tr><tr><th>설치</th><th>철거</th></tr><tr><td>철골공</td><td>인</td><td>2</td><td rowspan="3">120</td><td rowspan="3">170</td></tr><tr><td>용접공</td><td>인</td><td>2</td></tr><tr><td>보통인부</td><td>인</td><td>1</td></tr><tr><td>크레인</td><td>대</td><td>1</td><td></td><td></td></tr></table>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설치	철거	철골공	인	2	120	170	용접공	인	2	보통인부	인	1	크레인	대	1			[공통] 5장 기초 공사																																													
구분	단위	수량				시공량(㎡)																																																																	
			설치	철거																																																																			
철골공	인	2	120	170																																																																			
용접공	인	2																																																																					
보통인부	인	1																																																																					
크레인	대	1																																																																					
2. 개정내용 - 복공판 설치 및 철거 기준 신설		[주] ① 본 품은 주형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 및 철거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복공판 및 캡 설치, 이탈방지 연결, 틈새마감 작업을 포함한다. ③ 하부구조(주거터 및 지지보), 난간대, 미끄럼방지시설 설치 및 철거 작업은 별도 계상한다. ④ 크레인 규격은 작업여건(시공높이, 시공위치 등) 및 안전율(적정하중, 작업반경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격을 적용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용접기, 발전기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1. 항목유형 - 보완	5-3-2 말뚝박기용 천공('08, '15, '16, '20년 보완) 5. 작업소요시간 T (작업시간) : (T ₁ + T ₂ + T ₃)/f T ₁ (준비시간) : 3 min (천공위치 확인, 천공준비) T ₂ (천공시간) : ∑(L ₁ ×t ₁) L ₁ : 지층별 천공연장 t ₁ : 지층별 천공시간(m당) (min/m)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말뚝직경 (mm)</th><th colspan="2">토사</th><th rowspan="2">풍화암</th><th rowspan="2">연암</th><th rowspan="2">경암</th><th rowspan="2">혼합층</th></tr><tr><th>점질토</th><th>사질토</th></tr><tr><td>오 거 비 트</td><td>500미만</td><td>0.74</td><td>0.96</td><td>4.08</td><td>-</td><td>-</td><td></td></tr><tr><td>개 량 형 비 트</td><td>500미만</td><td>0.74</td><td>0.96</td><td>3.80</td><td>-</td><td>-</td><td>3.28</td></tr><tr><td>해 머 비 트</td><td>500미만</td><td>-</td><td>-</td><td>3.66</td><td>8.56</td><td>11.93</td><td></td></tr></table>	구분	말뚝직경 (mm)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혼합층	점질토	사질토	오 거 비 트	500미만	0.74	0.96	4.08	-	-		개 량 형 비 트	500미만	0.74	0.96	3.80	-	-	3.28	해 머 비 트	500미만	-	-	3.66	8.56	11.93		5-3-2 말뚝박기용 천공 5. 작업소요시간 T (작업시간) : (T ₁ + T ₂ + T ₃)/f T ₁ (준비시간) : 3 min (천공위치 확인, 천공준비) T ₂ (천공시간) : ∑(L ₁ ×t ₁) L ₁ : 지층별 천공연장 t ₁ : 지층별 천공시간(m당) (min/m)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말뚝직경 (mm)</th><th colspan="2">토사</th><th rowspan="2">풍화암</th><th rowspan="2">연암</th><th rowspan="2">경암</th><th rowspan="2">혼합층</th></tr><tr><th>점질토</th><th>사질토</th></tr><tr><td>오 거 비 트</td><td>500미만</td><td>0.74</td><td>0.96</td><td>4.08</td><td>-</td><td>-</td><td></td></tr><tr><td>개 량 형 비 트</td><td>500미만</td><td>0.74</td><td>0.96</td><td>3.80</td><td>-</td><td>-</td><td>3.28</td></tr><tr><td>해 머 비 트</td><td>500미만</td><td>-</td><td>-</td><td>3.66</td><td>8.56</td><td>11.93</td><td></td></tr></table>	구분	말뚝직경 (mm)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혼합층	점질토	사질토	오 거 비 트	500미만	0.74	0.96	4.08	-	-		개 량 형 비 트	500미만	0.74	0.96	3.80	-	-	3.28	해 머 비 트	500미만	-	-	3.66	8.56	11.93		[공통] 5장 기초 공사
구분	말뚝직경 (mm)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혼합층																																																										
		점질토	사질토																																																																				
오 거 비 트	500미만	0.74	0.96	4.08	-	-																																																																	
개 량 형 비 트	500미만	0.74	0.96	3.80	-	-	3.28																																																																
해 머 비 트	500미만	-	-	3.66	8.56	11.93																																																																	
구분	말뚝직경 (mm)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혼합층																																																																
		점질토	사질토																																																																				
오 거 비 트	500미만	0.74	0.96	4.08	-	-																																																																	
개 량 형 비 트	500미만	0.74	0.96	3.80	-	-	3.28																																																																
해 머 비 트	500미만	-	-	3.66	8.56	11.93																																																																	
2. 개정내용 - CIP 철근망 근입품 기준 명시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 T ₃ (말뚝근입시간) : 2min ※ 향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통부문] 5-3-1 기성말뚝 기초’의 t ₃ (말뚝근입/향타)의 작업시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f(작업계수) : 0.8	※ 개량형비트는 오거비트와 해머비트가 복합된 비트이며, 혼합층(호박돌, 전석발생 등 지질 특성으로 오거비트에 의한 굴착이 어렵거나 작업효율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에서 적용 가능하다. T ₃ (말뚝근입시간) : 2min ※ 향타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통부문] 5-3-1 기성말뚝 기초’의 t ₃ (말뚝근입/향타)의 작업시간을 참고하여 적용한다. ※ 주열식 현장벽체공법(CLP, Cast In Placed Pile)의 철근망 근입시간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f(작업계수) : 0.8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신설	- 항목 신설 -		6-1-7 콘크리트 현장양생공시체 제작			[공통] 6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조당)			
			구분	단위	수량	
			중급품질관리기술인	인	0.013	
2. 개정내용 - 공시체 제작 기준 신설			보통인부	인	0.013	
			[주] ① 본 품은 굳지않은 콘크리트 시험(압축강도)에 필요한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3개/조)을 기준한다.			
			② 본 품은 공시체 제작 및 이동, 보관 작업을 포함한다.			
			③ 공시체를 활용한 압축강도 시험은 별도 계상한다.			
		④ 본 품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 현장양생용 공시체 제작 시 적용하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비 산출 시 공시체 제작 비용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항목유형 - 보완	7-3-2 욕실금구류 설치('07년 신설, '14, '22년 보완)		7-3-2 욕실금구류 설치			[기계 설비] 7장 위생 기구 설비 공사
	(개당)		(개당)			
	규격		단위	위생공		
	수건걸이	B A R 형	인	0.099		
		환형	인	0.071		
	휴지걸이	노출형	인	0.071		
		매립형	인	0.150		
	비누대 · 컵대		인	0.071		
	옷걸이		인	0.071		
	[주] ① 본 품은 욕실 벽면에 볼트로 고정하는 금구류 기준이다.		[주] ① 본 품은 욕실 벽면에 볼트로 고정하는 금구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③ 휴지걸이 매립형 설치에는 슬리브BOX 매립 작업을 포함한다.		③ 휴지걸이 매립형 설치에는 슬리브BOX 매립 작업을 포함한다.			
2. 개정내용 - 손건조기 및 페이 퍼타올기 설치 기 준 추가 제시	수건걸이		B A R 형	인	0.099	
	휴지걸이		노출형	인	0.071	
			매립형	인	0.150	
	비누대 · 컵대		인	0.071		
	옷걸이		인	0.071		
	손건조기		인	0.108		
	[주] ① 본 품은 욕실 벽면에 볼트로 고정하는 금구류 기준이다.		[주] ① 본 품은 욕실 벽면에 볼트로 고정하는 금구류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② 본 품은 구멍뚫기, 칼블록 설치, 금구류 설치를 포함한다.			
	③ 휴지걸이 매립형 설치에는 슬리브BOX 매립 작업을 포함한다.		③ 휴지걸이 매립형 설치에는 슬리브BOX 매립 작업을 포함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신설	- 항목 신설 -	2-1-12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아스팔트구간) (일당)	[유지 관리] 2장 토목																																					
2. 개정내용 - 맨홀추락방지시설 (일체형,아스팔트 구간) 설치 기준 신설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시공량 (개소)</th></tr><tr><td>포장공</td><td></td><td>인</td><td>2</td><td rowspan="8">8</td></tr><tr><td>특별인부</td><td></td><td>인</td><td>2</td></tr><tr><td>보통인부</td><td></td><td>인</td><td>1</td></tr><tr><td>굴착기</td><td>0.4m³</td><td>대</td><td>1</td></tr><tr><td>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td><td>320~400mm</td><td>대</td><td>1</td></tr><tr><td>소형브레이커(전기식)</td><td>1.5kW</td><td>대</td><td>1</td></tr><tr><td>플레이트 콤팩터</td><td>1.5ton</td><td>대</td><td>1</td></tr><tr><td>덤프트럭</td><td>2.5ton</td><td>대</td><td>3</td></tr></table> [주] ① 본 품은 아스팔트포장 구간에서 기존 맨홀뚜껑을 철거하고, 맨홀뚜껑(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으로 교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아스팔트 절단 및 굴착, 기존 맨홀뚜껑 철거, 모르타르 바름, 맨홀뚜껑 교체(맨홀추락방지망 일체형), 아스팔트 채포장, 발생재 상차 작업을 포함한다. ③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이외의 아스팔트 절단을 위한 장비를 투입할 경우는 별도 계상한다. ④ 내부미장을 할 경우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⑤ 폐자재 및 잔토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⑥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⑦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개소)	포장공		인	2	8	특별인부		인	2	보통인부		인	1	굴착기	0.4m³	대	1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대	1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대	1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대	1	덤프트럭	2.5ton	대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개소)																																				
포장공		인	2	8																																				
특별인부		인	2																																					
보통인부		인	1																																					
굴착기	0.4m³	대	1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대	1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대	1																																					
플레이트 콤팩터	1.5ton	대	1																																					
덤프트럭	2.5ton	대	3																																					
1. 항목유형 - 신설	- 항목 신설 -	2-1-13 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보도구간) (일당)	[유지 관리] 2장 토목																																					
2. 개정내용 - 맨홀추락방지시설 (일체형,보도구간) 설치 기준 신설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시공량 (개소)</th></tr><tr><td>포장공</td><td></td><td>인</td><td>2</td><td rowspan="4">8</td></tr><tr><td>특별인부</td><td></td><td>인</td><td>1</td></tr><tr><td>보통인부</td><td></td><td>인</td><td>1</td></tr><tr><td>덤프트럭</td><td>2.5ton</td><td>대</td><td>1</td></tr></table> [주] ① 본 품은 보도블록구간에서 기존 맨홀뚜껑을 철거하고, 맨홀뚜껑(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으로 교체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보도블록 및 기존 맨홀뚜껑 철거, 모르타르 바름, 맨홀뚜껑 교체(일체형 맨홀추락방지망), 보도블록 채포장, 발생재 상차 작업을 포함한다. ③ 내부미장을 할 경우 품을 별도 계상한다. ④ 폐자재 및 잔토 처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3%로 계상한다. ⑥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개소)	포장공		인	2	8	특별인부		인	1	보통인부		인	1	덤프트럭	2.5ton	대	1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 (개소)																																				
포장공		인	2	8																																				
특별인부		인	1																																					
보통인부		인	1																																					
덤프트럭	2.5ton	대	1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신설		2-1-14 부착형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유지관리] 2장 토목																		
		(일당)																			
		<table><tr><th>구분</th><th>규격</th><th>단위</th><th>수량</th><th>시공량(개소)</th></tr><tr><td>특별인부</td><td></td><td>인</td><td>2</td><td rowspan="3">12</td></tr><tr><td>보통인부</td><td></td><td>인</td><td>1</td></tr><tr><td>덤프트럭</td><td>2.5ton</td><td>대</td><td>1</td></tr></table>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개소)	특별인부		인	2	12	보통인부		인	1	덤프트럭	2.5ton	대	1
		구분		규격	단위	수량	시공량(개소)														
		특별인부			인	2	12														
보통인부		인	1																		
덤프트럭	2.5ton	대	1																		
[주] ① 본 품은 기존 맨홀 콘크리트슬래브에 맨홀추락방지망(부착형)을 설치하는 기준이다.																					
② 본 품은 구멍뚫기, 맨홀추락방지망 설치 및 앵커고정 작업을 포함한다.																					
2. 개정내용 - 맨홀추락방지시설(부착형) 설치 기준 신설	- 항목 신설 -	③ 공구손료 및 경장비(발전기, 전동드릴 등)의 기계경비는 인력품의 5%로 계상한다.																			
		④ 재료량은 설계수량을 적용한다.																			

－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항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2-2 단위표준('12, '23년 보완) 2. 금액의 단위표준 - 본문 생략 - [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자리 1자리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 계산할 수 있다.	1-2-2 단위표준 2. 금액의 단위표준 - 본문 생략 - [주] 일위대가표 금액란 또는 기초계산금액에서 소액이 산출되어 공종이 없어질 우려가 있어 소수자리 1자리 이하의 산출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소수자리의 정도를 조정 계산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2-4 재료 및 자재의 단가('05, '06, '14, '12, '22, '23년 보완) 2. 재료 및 자재의 단가 가, 다. '생략' 나.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산할 수 있다. 6. 강판배관의 부자재 산정요율 - 본문 생략 - [주] ①~⑦ '생략' ⑧ 통기배관의 요율은 환상통기식이므로 각개 통기방식일 때는 별도 계산할 수 있다. ⑨ 상기부자재 산정요율 계산방식과 도면에 의한 물량산출 방식을 병행사용 할 수 있다.	1-2-4 재료 및 자재의 단가 2. 재료 및 자재의 단가 가, 다. '생략' 나. 재료 및 자재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산한다. 6. 강판배관의 부자재 산정요율 - 본문 생략 - [주] ①~⑦ '생략' ⑧ 통기배관의 요율은 환상통기식이므로 각개 통기방식일 때는 별도 계산한다. ⑨ 상기부자재 산정요율 계산방식과 도면에 의한 물량산출 방식을 병행사용 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4-1 적용기준('23년 보완) 1 5. 할증율(%)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할증율의 범위내에서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다.	1-4-1 적용기준 5. 할증율(%)은 요소별 일반적인 작업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부의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할증율의 범위내에서 보완하여 적용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04, '06, '12, '20, '23년 보완)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다.	1-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46조 및 제241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신호업무담당자,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공사도급 내역서에 반영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5-6 사용료 1.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산할 수 있다. 2.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산할 수 있다.	1-5-6 사용료 1. 계약에 따른 특허료와 기술료 등에 대한 비용을 계산한다. 2. 공사에 필요한 경비 중 전력비, 수도광열비, 운반비, 기계경비, 가설비, 시험검사비 등을 계산한다.	[공통]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5-8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 공사완공 후 각 기기의 단독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장치나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은 계상할 수 있다.	1-5-8 종합시운전 및 조정비 공사완공 후 각 기기의 단독시운전이 끝난 다음에 장치나 설비 전체의 종합적인 시운전 및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품 및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2-12-2 마스트 설치 및 해체('23년 신설)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 '내용 생략' ③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2-12-2 마스트 설치 및 해체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 '생략' ③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3-2-1 굴착(인력/토사)('08, '20, 25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 '내용 생략' ④ 용수가 있는 곳은 시공량의 33% 까지 감할 수 있다.	3-2-1 굴착(인력/토사) - 본문 생략 - [주] ①~③ '내용 생략' ④ 용수가 있는 곳은 시공량의 33%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3-2-2 굴착(인력/암반)('20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 '내용 생략'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1% 까지 계상할 수 있다.	3-2-2 굴착(인력/암반) - 본문 생략 - [주] ①~③ '내용 생략' ④ 잡재료는 인력품의 1% 를 계상한다.	[공통]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4-1-3 초화류 식재('13, '19, '24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 '내용 생략' ②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포석화단)은 시공량을 17% 까지 감할 수 있다.	4-1-3 초화류 식재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 '내용 생략' ② 특수화단(화문화단, 리본화단, 포석화단)은 시공량을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4-2-1 굴 취('13, '19, '24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⑥ '내용 생략' ⑦ 굴취 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을 17% 까지 감할 수 있다.	4-2-1 굴 취 - 본문 생략 - [주] ①~⑥ '내용 생략' ⑦ 굴취 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을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4-2-2 식재(단식(單植))('13, '19, '24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⑥ '내용 생략'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4-2-2 식재(단식(單植)) - 본문 생략 - [주] ①~⑥ '내용 생략'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4-2-3 식재(군식(群植))('02년 신설, '13, '19, '24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⑥,⑧ '내용 생략'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4-2-3 식재(군식(群植)) - 본문 생략 - [주] ①~⑥,⑧ '내용 생략' ⑦ 암반식재, 부적기식재 등 특수식재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공통]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4-3-2 굴취(나무높이)('13, '19, '24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⑥ '내용 생략'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까지 감할 수 있다.	4-3-2 굴취(나무높이)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⑥ '내용 생략'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4-3-3 굴취(근원직경)('19, '24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⑦ '내용 생략'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까지 감할 수 있다.	4-3-3 굴취(근원직경)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⑦ '내용 생략' ④ 굴취시 야생일 경우에는 시공량의 17%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4-3-4 식재(나무높이)('02, '13, '19, '24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④ '내용 생략' ⑤ 암반식재, 부정기식재 등 특수식재 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4-3-4 식재(나무높이) - 본문 생략 - [주] ①~④ '내용 생략' ⑤ 암반식재, 부정기식재 등 특수식재 시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4-3-5 식재(흉고직경)('19, '24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⑤,⑦ '내용 생략' ⑥ 암반식재, 부정기식재 등 특수식재 시는 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4-3-5 식재(흉고직경) - 본문 생략 - [주] ①~⑤,⑦ '내용 생략' ⑥ 암반식재, 부정기식재 등 특수식재 시는 품을 별도 계상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4-4-1 정원석 쌓기 및 놓기('03, '19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⑤ '내용 생략' ③ 지형 등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4-4-1 정원석 쌓기 및 놓기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⑤ '내용 생략' ③ 지형 등 작업의 난이도에 따라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공통]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5-1-5 어스앵커 공법('20년 보완) 3. 작업소요시간	5-1-5 어스앵커 공법 3. 작업소요시간	[공통]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 본문 생략 - [주] ① ‘내용 생략’ ② 타 공종(토공사 등)과 간섭, 작업시간 통제 등 공사시간의 제약으로 작업시간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본문 생략 - [주] ① ‘내용 생략’ ② 타 공종(토공사 등)과 간섭, 작업시간 통제 등 공사시간의 제약으로 작업시간의 현저한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작업계수를 조정하여 적용한다.																											
1. 항목유형 - 보완	5-3-5 현장타설말뚝('15, '21년 보완) 3. 굴착 다. 작업소요시간(본당)	5-3-5 현장타설말뚝 3. 굴착 다. 작업소요시간(본당)	[공통]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말뚝직경 (mm)</th><th colspan="3">토사</th><th rowspan="2">풍화암</th><th rowspan="2">연암</th><th rowspan="2">경암</th></tr><tr><th>점질토</th><th>사질토</th><th>자갈</th></tr></table> - 내용 생략 - <table><tr><td>비 고</td><td>- 극경암 등 이상 지질층 발생으로 천공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천공시간을 증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td></tr></table>	구 분	말뚝직경 (mm)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점질토	사질토	자갈	비 고	- 극경암 등 이상 지질층 발생으로 천공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천공시간을 증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table><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말뚝직경 (mm)</th><th colspan="3">토사</th><th rowspan="2">풍화암</th><th rowspan="2">연암</th><th rowspan="2">경암</th></tr><tr><th>점질토</th><th>사질토</th><th>자갈</th></tr></table> - 내용 생략 - <table><tr><td>비 고</td><td>- 극경암 등 이상 지질층 발생으로 천공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천공시간을 증하여 적용한다.</td></tr></table>	구 분	말뚝직경 (mm)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점질토	사질토	자갈	비 고	- 극경암 등 이상 지질층 발생으로 천공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천공시간을 증하여 적용한다.	
구 분	말뚝직경 (mm)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점질토	사질토	자갈																									
비 고	- 극경암 등 이상 지질층 발생으로 천공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천공시간을 증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구 분	말뚝직경 (mm)	토사			풍화암	연암	경암																						
		점질토	사질토	자갈																									
비 고	- 극경암 등 이상 지질층 발생으로 천공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 천공시간을 증하여 적용한다.																												
1. 항목유형 - 보완	6-1-5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04, '08, '11, '22년 보완) - 본문 생략 -	6-1-5 에폭시(Epoxy)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 본문 생략 -	[공통]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주] ①,③,④ ‘생략’ ②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주] ①,③,④ ‘생략’ ②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1. 항목유형 - 보완	6-2-4 공장가공('08년 신설, '09, '22년 보완) - 본문 생략 -	6-2-4 공장가공 - 본문 생략 -	[공통]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주] ①,②,④ ‘생략’ ③ 공장관리비는 노무품의 60%까지 계상할 수 있다.	[주] ①,②,④ ‘생략’ ③ 공장관리비는 노무품의 6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6-2-5 철근의 기계적 이음				6-2-5 철근의 기계적 이음				[공통]				
	(개소당)				(개소당)								
	구분		단위	수량	비고	구분		단위		수량	비고		
	아세틸렌	ℓ	133	수평, 수직 이음 공통	아세틸렌	ℓ	133	수평, 수직 이음 공통					
	산소	"	744		산소	"	744						
	용접	인	0.06		용접	인	0.06						
	연마	"	0.15		연마	"	0.15						
절단	"	0.09	절단		"	0.09							
조력	"	0.11	조력	"	0.11								
비고		- 철근 두께 3mm증가시마다 인력품의 5%를 가산한다.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주] ① 본 품은 D35mm이상 철근의 기계적 이음 중 화약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품이다. ② 공구 손료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본 품은 높이를 10m미만을 기준한 것이며 높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력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주] ① 본 품은 D35mm이상 철근의 기계적 이음 중 화약을 이용하여 용접하는 품이다. ② 공구 손료 및 잡재료비는 별도 계상한다. ③ 이음자재(Splices Kit)는 별도 계상한다. ④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⑤ 본 품은 원자로 격납시설물 등 특수구조물의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높이		10m~20m미만		20m 이상								
	할증률 (%)		10		20								
	④ 이음자재(Splices Kit)는 별도 계상한다.												
	⑤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비용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⑥ 본 품은 원자로 격납시설물 등 특수구조물의 철근 이음을 하는 경우 적용한다.												
1. 항목유형 - 보완	6-3-2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04, '07, '08, '17, '22, '24년 보완)				6-3-2 강재거푸집 설치 및 해체				[공통]				
	2. 인력 설치 및 해체				2. 인력 설치 및 해체								
	(100m'당)				(100m'당)								
	명칭		단위	설치	해체	계	명칭			단위	설치	해체	계
	- 생략 -				- 생략 -								
	비고		- 수직고 7m이상인 경우에는 3m증가마다 품을 10%까지 별도 가산할 수 있다.										
	[주] - 생략 -				[주] - 생략 -								
1. 항목유형 - 보완	6-3-5 합성수지(P.E)원형 맨홀 거푸집 설치 및 해체('08년 보완)				6-3-5 합성수지(P.E)원형 맨홀 거푸집 설치 및 해체				[공통]				
	- 본문 생략 -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 ‘생략’				[주] ①,②,④ ‘생략’								
	③ 수직고 H=2.0m 이상인 경우에는 비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③ 수직고 H=2.0m 이상인 경우에는 비계를 별도 계상한다.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6-5-1 빔 가설공('08, '21, '25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⑨ ‘생략’ ⑩ 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5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	6-5-1 빔 가설공 - 본문 생략 - [주] ①~⑨ ‘생략’ ⑩ 빔 가설위치가 하천통과구간, 지장물에 의한 저촉 등 가설조건이 불량한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500ton급을 초과하는 대형크레인의 적용이 가능하며, 가설품은 크레인 가설능력과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계상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8-1-3 운반 및 수송('10, '17년 보완) 2. 수송비('10년 보완) 가. 건설용기계의 공사 현장까지의 왕복 수송비는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시·도·군·구청소재지(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수송에 필요한 경비(공인된 수속비, 인건비 등 포함)를 계상한다. 다만, 구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기종에 대하여는 그 기종이 소재한다고 인정되는 가장 가까운 시·도·군·구청소재지(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로부터의 수송비를 계상할 수 있다.	8-1-3 운반 및 수송 2. 수송비 가. 건설용기계의 공사 현장까지의 왕복 수송비는 건설공사장에서 가장 가까운 시·도·군·구청소재지(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로부터 공사현장까지의 수송에 필요한 경비(공인된 수속비, 인건비 등 포함)를 계상한다. 다만, 구둑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기종에 대하여는 그 기종이 소재한다고 인정되는 가장 가까운 시·도·군·구청소재지(서울특별시, 광역시 포함)로부터의 수송비를 계상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8-1-7 손료보정 등('25년 보완) 1. 기계손료의 보정 다음 건설기계가 암석굴착, 암석적재, 암석운반 등의 가혹한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손료(관리비 제외)를 다음과 같이 보정 가산할 수 있다. - 본문 생략 - [주] ① 전용덤프트럭(18톤이상)과 불도저(19톤이상)의 경우는 보정하지 않는다. 단, 타이어 불도저, 습지 불도저는 보정할 수 있다. ② ‘생략’ 2. 기계경비의 보정 건설기계의 운전시간이 현장조건 및 공정계획상 연간 표준 가동시간보다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에는 기계손료 중 관리비와 운전경비 중 인건비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3. 펌프식 준설선으로 자갈 및 역전석과 쇄암된 암이 포함된 흙을 준설할 때에는 과다마모로 인한 수리비의 증가를 고려하여 손료를 보정계상할 수 있다.	8-1-7 손료보정 등 1. 기계손료의 보정 다음 건설기계가 암석굴착, 암석적재, 암석운반 등의 가혹한 작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손료(관리비 제외)를 다음과 같이 보정 가산한다. - 본문 생략 - [주] ① 전용덤프트럭(18톤이상)과 불도저(19톤이상)의 경우는 보정하지 않는다. 단, 타이어 불도저, 습지 불도저는 보정한다. ② ‘생략’ 2. 기계경비의 보정 건설기계의 운전시간이 현장조건 및 공정계획상 연간 표준 가동시간보다 현저하게 저하될 경우에는 기계손료 중 관리비와 운전경비 중 인건비를 별도 산정한다. 3. 펌프식 준설선으로 자갈 및 역전석과 쇄암된 암이 포함된 흙을 준설할 때에는 과다마모로 인한 수리비의 증가를 고려하여 손료를 보정하여 계상한다.	[공통]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8-2-3 굴착기('04, '07, '09, '25년 보완) 2. 작업효율(E) - 본문 생략 - [주] ①~⑤ ‘생략’ ⑥ 굴착작업시 지하매설물(각종 매설관 등)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는 작업효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주택가지역에서 상하수도관로부설 등의 공사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작업효율(E)을 적용할 수 있다.	8-2-3 굴착기 2. 작업효율(E) - 본문 생략 - [주] ①~⑤ ‘생략’ ⑥ 굴착작업시 지하매설물(각종 매설관 등)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는 작업효율을 별도로 정한다. ⑦ 주택가지역에서 상하수도관로부설 등의 공사시 작업장소가 협소하고 지하매설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현저하게 저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작업효율(E)을 적용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8-2-5 로더('07, '20년 보완) 2. K의 값 - 본문 생략 - [주] ① ‘생략’ ② 위 표는 타이어식 로더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단, 발파암 및 암괴 등을 적재할 경우는 무한궤도식 로더로 계상할 수 있다. ③ 함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지대 작업 등 특별한 경우는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8-2-5 로더 2. K의 값 - 본문 생략 - [주] ① ‘생략’ ② 위 표는 타이어식 로더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단, 발파암 및 암괴 등을 적재할 경우는 무한궤도식 로더로 계상한다. ③ 함수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지대 작업 등 특별한 경우는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8-2-24 진동파일 해머('96년 보완) 2. 강널말뚝 다. 진동해머, 크레인(무한궤도), 발전기의 조합 진동파일 해머의 조합장비의 규격은 다음표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조건에 따라 본 장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바. 기타 (1) 전기 용접이 필요한 경우 용접기와 용접공(대당 1인)을 2인까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2) ‘생략’ (3) 직선형 기준틀 사용이 곤란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8-2-24 진동파일 해머 2. 강널말뚝 다. 진동해머, 크레인(무한궤도), 발전기의 조합 진동파일 해머의 조합장비의 규격은 다음표를 표준으로 하되 현장 조건에 따라 본 장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로 적용한다. 바. 기타 (1) 전기 용접이 필요한 경우 용접기와 용접공(대당 1인)을 2인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한다. (2) ‘생략’ (3) 직선형 기준틀 사용이 곤란할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별도 계상한다.	[공통]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8-2-25 진동파일해머(위터제트 병용 압입공) 3. 장비조합 다. 진동해머, 크레인(무한궤도), 발전기의 조합 진동파일해머의 조합장비의 규격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조건에 따라 본 장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4. 배치인원(인/일) - 본문 생략 - [주] 용접공 1인은 위터제트 관입 강관 제작설치 및 해체에 적용되는 품이며, 강널말뚝 향타시 전기용접기가 필요한 경우 용접공 1인 까지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8-2-25 진동파일해머(위터제트 병용 압입공) 3. 장비조합 다. 진동해머, 크레인(무한궤도), 발전기의 조합 진동파일해머의 조합장비의 규격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하되 현장조건에 따라 본 장비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는 별도로 적용한다. 4. 배치인원(인/일) - 본문 생략 - [주] 용접공 1인은 위터제트 관입 강관 제작설치 및 해체에 적용되는 품이며, 강널말뚝 향타시 전기용접기가 필요한 경우 용접공 1인 을 별도 계상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8-2-26 유압식 압입 인발기(유압식 압입 인발공) 5. 배치인원(인/일) - 본문 생략 - [주] 전기용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접기와 용접공(대당 1인)을 2인 까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8-2-26 유압식 압입 인발기(유압식 압입 인발공) 5. 배치인원(인/일) - 본문 생략 - [주] 전기용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용접기와 용접공(대당 1인)을 2인 범위 내에서 별도 계상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8-2-27 수중펌프 1. 펌프의 선정 - 본문 생략 - [주] ① 공기, 양정 현장여건이 상기표로서 곤란한 경우는, 현장조건에 맞는 기종, 규격의 펌프를 계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8-2-27 수중펌프 1. 펌프의 선정 - 본문 생략 - [주] ① 공기, 양정 현장여건이 상기표로서 곤란한 경우는, 현장조건에 맞는 기종, 규격의 펌프를 계상한다. ②~④ ‘생략’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8-2-28 터널전단면 굴착기(TBM) 4. 1회 싸이클 시간 - 본문 생략 - [주] ① ‘생략’ ② 철분, 석영분 등 함유량이 상이한 경우 실적치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할 수 있다.	8-2-28 터널전단면 굴착기(TBM) 4. 1회 싸이클 시간 - 본문 생략 - [주] ① ‘생략’ ② 철분, 석영분 등 함유량이 상이한 경우 실적치를 참조하여 별도 계상한다.	[공통]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8-2-29 펌프식 준설선('10, '11년 보완) <계제선 적용표> - 본문 생략 - ② '생략' ③ 본표에 규정된 토질 이외의 특수한 토질(역전석 등)을 부득이 준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실적치를 참조하여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8-2-29 펌프식 준설선 <계제선 적용표> - 본문 생략 - ② '생략' ③ 본표에 규정된 토질 이외의 특수한 토질(역전석 등)을 부득이 준설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실적치를 참조하여 별도로 계상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8-3-4 [30]포장기계 (3108)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본문 생략 - [주] ① '생략' ② 자동기록장치 등의 부착이 필요할 때는 이에 상당한 경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8-3-4 [30]포장기계 (3108)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 본문 생략 - [주] ① '생략' ② 자동기록장치 등의 부착이 필요할 때는 이에 상당한 경비를 별도 계상한다.	[공통]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8-1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08년 신설, '20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 '생략' ④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설치할 경우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8-1 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 '생략' ④ 상기 품과 다른 형식 및 규격으로 표지를 설치할 경우 별도 계상한다.	[토목]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8-10 가드레일 설치('08, '17, '20년 보완) 2. 판 설치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 '생략' ④ 램프구간 등 곡선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시 시공량의 40%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1-8-10 가드레일 설치 2. 판 설치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 '생략' ④ 램프구간 등 곡선구간의 가드레일 설치 시 시공량의 40%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토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3-1-1 터널노임 산정식('07, '13, '20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 본 노임 산정표준은 연장 1,000m 까지의 일반터널의 경우이며, 장대터널은 별도 장대터널 할증을 가산할 수 있다. ②~⑧ '생략'	3-1-1 터널노임 산정식 - 본문 생략 - [주] ① 본 노임 산정표준은 연장 1,000m 까지의 일반터널의 경우이며, 장대터널은 별도 장대터널 할증을 가산한다. ②~⑧ '생략'	[토목]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3-1-2 터널 여굴(餘掘)량('07, '13, '17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 '생략' ② 암질의 절리 및 풍화가 발달하여 터널타입과 관계없이 과다 여굴이 발생되거나, 해저터널에서 강관다단 등 터널보강이 필요하여 공법상 불가피하게 추가 여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굴기준의 20%이내에서 추가 적용 할 수 있다. ③ “바닥 및 인버트”구간은 버력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 적용하며, 암질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는 5cm이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3-1-2 터널 여굴(餘掘)량 - 본문 생략 - [주] ① '생략' ② 암질의 절리 및 풍화가 발달하여 터널타입과 관계없이 과다 여굴이 발생되거나, 해저터널에서 강관다단 등 터널보강이 필요하여 공법상 불가피하게 추가 여굴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여굴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적용한다. ③ “바닥 및 인버트”구간은 버력을 제거한 후 콘크리트 등으로 채우는 경우에 적용하며, 암질에 따라 달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수로터널 등 단면이 적은 경우는 5cm이내에서 현장 여건에 따라 적용한다.	[토목]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사이클 시간(Cycle Time)('07, '13, '20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⑤,⑧~⑫,⑬ '생략' ⑥ 터널굴착시 보조공법의 사이클 타임은 필요시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⑦ 용수발생으로 굴착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굴착 사이클을 30%까지 증가하여 계상할 수 있다.	3-2-1 터널굴착 1발파당 사이클 시간(Cycle Time) - 본문 생략 - [주] ①~⑤,⑧~⑫,⑬ '생략' ⑥ 터널굴착시 보조공법의 사이클 타임은 필요시 별도 계상한다. ⑦ 용수발생으로 굴착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굴착 사이클을 30% 범위 내에서 증하여 적용한다.	[토목]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4-5-1 가스압접('19년 보완) - 본문 생략 - [참고자료] 레일공사 가스압접 소모재료 [주] ① 기타 소모품비는 주재료비의 10%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② '생략'	4-5-1 가스압접 - 본문 생략 - [참고자료] 레일공사 가스압접 소모재료 [주] ① 기타 소모품비는 주재료비의 1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② '생략'	[토목]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4-5-2 테르밋 용접('19년 보완) - 본문 생략 - [참고자료] 레일공사 테르밋 용접 소모재료 [주] ① 기타 재료비는 주재료비의 30%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② '생략'	4-5-2 테르밋 용접 - 본문 생략 - [참고자료] 레일공사 테르밋 용접 소모재료 [주] ① 기타 재료비는 주재료비의 3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② '생략'	[토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6-2-2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23, '25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⑥ '생략' ④ 이탈방지 압륜을 사용하여 접합할 경우 본 품을 30%까지 증하여 적용 할 수 있다.	6-2-2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⑥ '생략' ④ 이탈방지 압륜을 사용하여 접합할 경우 본 품을 3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토목]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10, '14, '18, '23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⑤,⑥ '생략' ③ 파형강관 8m 직관에서는 크레인(시간)을 10%까지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6-7-2 파형강관 부설 및 접합('10, '14, '18, '23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⑤,⑥ '생략' ③ 파형강관 8m 직관에서는 크레인(시간)을 1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토목]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6-7-5 강관압입추진공 1. 장비조립 및 해체('10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 '생략' ②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3. 작업편성장비 - 본문 생략 - [주]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6-7-5 강관압입추진공 1. 장비조립 및 해체 - 본문 생략 - [주] ① '생략' ②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한다. 3. 작업편성장비 - 본문 생략 - [주]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한다.	[토목]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6-8-3 주철제·강관제 버티플라이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23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 '생략' ④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장비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인력품을 별도 계상할 수 있다.	6-8-3 주철제·강관제 버티플라이 제수밸브 부설 및 접합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 '생략' ④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장비투입이 불가능할 경우, 인력품을 별도 계상한다.	[토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6-8-6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11년 신설)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⑤ '생략' ③ 물이 흐르지 않는 단수상태에서는 본 품을 20%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6-8-6 부단수 천공 새들분수전 분기점 분기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⑤ '생략' ③ 물이 흐르지 않는 단수상태에서는 본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토목]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7-4-7 매립설계수량 매립 설계수량에는 매립토의 유실, 더돈기, 압밀침하량 등을 감안하여 계상할 수 있다.	7-4-7 매립설계수량 매립 설계수량에는 매립토의 유실, 더돈기, 압밀침하량 등을 감안하여 계상한다.	[토목]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8-1-3 천공(암반층) - 본문 생략 - [주] ① 본 품은 보링 깊이 20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깊이가 10m 증가마다 인력품을 5%이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②~⑧ '생략'	8-1-3 천공(암반층) - 본문 생략 - [주] ① 본 품은 보링 깊이 20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깊이가 10m 증가마다 인력품을 5%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②~⑧ '생략'	[토목]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8-2-1 표준관입시험 - 본문 생략 - [주] ① 본 품은 보링과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이며 목적에 따라서 관입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할 수 있다. ②~④ '생략'	8-2-1 표준관입시험 - 본문 생략 - [주] ① 본 품은 보링과 병행하여 시행할 경우이며 목적에 따라서 관입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별도로 계상한다. ②~④ '생략'	[토목]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8-4-3 폐공 되메우기 [주] ①,③,④ '생략' ② 본 품은 깊이 2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m증가시마다 품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8-4-3 폐공 되메우기 [주] ①,③,④ '생략' ② 본 품은 깊이 200m까지를 기준한 것이므로, 200m를 초과할 경우에는 100m증가시마다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토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2-1 현장 세우기('08, '18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 ‘생략’ ④ 자재의 진출입이 어렵고, 작업공간이 협소한 현장(도심지 등)에서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 할 수 있다. ⑥ 현장세우기 보정 ※ 발전소, 공항터미널 등과 같은 특수구조물과 50층 이상(또는 150M 이상)의 초고층건물 현장세우기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1-2-1 현장 세우기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 ‘생략’ ④ 자재의 진출입이 어렵고, 작업공간이 협소한 현장(도심지 등)에서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⑥ 현장세우기 보정 ※ 발전소, 공항터미널 등과 같은 특수구조물과 50층 이상(또는 150M 이상)의 초고층건물 현장세우기는 별도 계상한다.	[건축]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6-4-3 방수모르타르 바름('09, '15, '18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 ‘생략’ ③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6-4-3 방수모르타르 바름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 ‘생략’ ③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건축]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6-5-2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09, '18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 ‘생략’ ②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6-5-2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 ‘생략’ ② 외벽은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건축]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02, '18, '24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⑥ ‘생략’ ④ 본 품은 평지 기준으로 지형에 따라서 품을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8-2-3 철조망 울타리 설치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⑥ ‘생략’ ④ 본 품은 평지 기준으로 지형에 따라서 품을 2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건축]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8-2-4 경량천장철골틀 설치('02, '07, '16, '22, '24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 ‘생략’ ④ 특수구조의 천장(우물천장 등)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8-2-4 경량천장철골틀 설치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 ‘생략’ ④ 특수구조의 천장(우물천장 등)은 별도 계상한다.	[건축]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0-3-2 커튼월유리 설치('14, '20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④ ‘생략’ ⑤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 3층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10-3-2 커튼월유리 설치 - 본문 생략 - [주] ①~④ ‘생략’ ⑤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 3층마다 4%씩 가산한다.	[건축]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0-4-1 알루미늄 프레임 설치('14, '20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⑥ ‘생략’ ⑦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 3층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10-4-1 알루미늄 프레임 설치 - 본문 생략 - [주] ①~⑥ ‘생략’ ⑦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 3층마다 4%씩 가산한다.	[건축]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0-4-2 외벽 패널 설치('14, '20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⑤ ‘생략’ ⑥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 3층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10-4-2 외벽 패널 설치 - 본문 생략 - [주] ①~⑤ ‘생략’ ⑥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 3층마다 4%씩 가산한다.	[건축]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0-4-3 코킹('14년 신설, '20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 ‘생략’ ④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 3층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10-4-3 코킹 - 본문 생략 - [주] ①~③ ‘생략’ ④ 외벽의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인 경우 매 3층마다 4%씩 가산한다.	[건축]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15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⑥ ‘생략’ ④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할 수 있다.	11-1-1 콘크리트·모르타르면 바탕만들기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⑥ ‘생략’ ④ 비계사용시 높이에 따라 다음 할증률에 의한 품을 가산할 수 있으며 19층 이상은 매 3층 증가마다 4%씩 가산한다.	[건축]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3-2-1 일반마감 밸브보온('92, '14, '20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② ‘생략’ ③ 알람체크밸브, 준비작동식밸브 등 각종부속(자동경보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 등)이 부착되어 있는 밸브에 보온하는 경우 25%까지 가산할 수 있다.	3-2-1 일반마감 밸브보온 - 본문 생략 - [주] ①,② ‘생략’ ③ 알람체크밸브, 준비작동식밸브 등 각종부속(자동경보장치, 배수밸브, 작동시험밸브, 압력스위치, 압력계 등)이 부착되어 있는 밸브에 보온하는 경우 25%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기계설비]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9-5-2 건물의 냉난방 및 공조설비 정밀진단(T.A.B)('92년 보완)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전체시스템, 공기분배계통, 물분배계통, 소음 및 진동 등의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9-5-2 건물의 냉난방 및 공조설비 정밀진단(T.A.B) 정밀진단이 필요한 경우 전체시스템, 공기분배계통, 물분배계통, 소음 및 진동 등의 T.A.B(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 계상한다.	[기계설비]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3-1-1 플랜트 배관 설치('92, '03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⑪,⑬ ‘생략’ ② 본 품은 Fitting류, Bracket류, Support류(hanger, shoe, Guide, Clamp, U-Bolt 등) 및 Valve류 등의 중량을 전체배관 설치중량의 30%로 간주하여 배관하는 품으로 10% 증감할 때마다 본 품에 10%씩 가감하고(단, 매설배관은 제외), Fitting류, Bracket류, Support 및 밸브류 등이 공장에서 제작조립된 경우에는 본 품에 30%까지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⑫ 비파괴검사시 KS 1급 기준인 경우는 본 품에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	13-1-1 플랜트 배관 설치 - 본문 생략 - [주] ①,③~⑪,⑬ ‘생략’ ② 본 품은 Fitting류, Bracket류, Support류(hanger, shoe, Guide, Clamp, U-Bolt 등) 및 Valve류 등의 중량을 전체배관 설치중량의 30%로 간주하여 배관하는 품으로 10% 증감할 때마다 본 품에 10%씩 가감하고(단, 매설배관은 제외), Fitting류, Bracket류, Support 및 밸브류 등이 공장에서 제작조립된 경우에는 본 품에 3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⑫ 비파괴검사시 KS 1급 기준인 경우는 본 품에 10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기계설비]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3-1-7 장거리 배관('93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 ③~⑫ ‘생략’ ② 본 품은 비파괴검사 KS 2급 기준이며, KS 1급 적용시는 본 품에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	13-1-7 장거리 배관 - 본문 생략 - [주] ①, ③~⑫ ‘생략’ ② 본 품은 비파괴검사 KS 2급 기준이며, KS 1급 적용시는 본 품에 10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기계설비]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3-1-8 이중보온관 설치 1. 이중보온관 부설 - 본문 생략 - [주] ①~④,⑥~⑧,⑫~⑮ ‘생략’ ⑤ 본 품은 지장물통과, 도로 및 철도횡단, 수중, 터널내 등 특수 부설구간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⑨ 타 공사와 병행작업시는 본 품에 20%까지 계상할 수 있다. ⑩ 장비 휴지 대기시간이 1일 1시간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노무비, 관리비를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⑪ 배관작업 구간내에 가설작업장을 건설치 못할 경우 장비 및 인원이동을 위하여 본 품에 10% 가산할 수 있다. 2. 이중보온관 용접 - 본문 생략 - [주] ①,③~⑧,⑩,⑫,⑬ ‘생략’ ② 본 품은 12m를 기준한 것이며 지장물 통과, 도로 및 철도 횡단, 수중, 터널내 등 특수구간은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⑨ 장비 휴지 대기시간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노무비, 관리비는 별도 계상할 수 있다. ⑪ MITER용접시는 본 품에 50%까지 할증을 고려하여 가산할 수 있다.	13-1-8 이중보온관 설치 1. 이중보온관 부설 - 본문 생략 - [주] ①~④,⑥~⑧,⑫~⑮ ‘생략’ ⑤ 본 품은 지장물통과, 도로 및 철도횡단, 수중, 터널내 등 특수 부설구간은 별도 계상한다. ⑨ 타 공사와 병행작업시는 본 품에 20% 범위 내에서 계상한다. ⑩ 장비 휴지 대기시간이 1일 1시간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노무비, 관리비를 별도 계상한다. ⑪ 배관작업 구간내에 가설작업장을 건설치 못할 경우 장비 및 인원이동을 위하여 본 품에 10%를 가산한다. 2. 이중보온관 용접 - 본문 생략 - [주] ①,③~⑧,⑩,⑫,⑬ ‘생략’ ② 본 품은 12m를 기준한 것이며 지장물 통과, 도로 및 철도 횡단, 수중, 터널내 등 특수구간은 별도 계상한다. ⑨ 장비 휴지 대기시간이 1일 1시간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장비에 대한 노무비, 관리비는 별도 계상한다. ⑪ MITER용접시는 본 품에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기계 설비]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3-2-3 강관용접('18년 보완) 1. 전기아크용접 - 본문 생략 - [주] ①~④,⑦~⑩ ‘생략’ ⑤ 비파괴검사 KS 1급 적용시에는 본 품에 100%까지 가산할 수 있다. ⑥ 다음과 같은 용접작업인 경우는 본 품을 증감할 수 있다. 2. TIG(Tungsten Inert Gas) 용접('18년 신설) - 본문 생략 - [주] ①~⑤,⑦,⑧ ‘생략’ ⑥ 다음과 같은 용접작업인 경우는 본 품을 증감할 수 있다.	13-2-3 강관용접 1. 전기아크용접 - 본문 생략 - [주] ①~④,⑦~⑩ ‘생략’ ⑤ 비파괴검사 KS 1급 적용시에는 본 품에 10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⑥ 다음과 같은 용접작업인 경우는 본 품을 증감한다. 2. TIG(Tungsten Inert Gas) 용접 - 본문 생략 - [주] ①~⑤,⑦,⑧ ‘생략’ ⑥ 다음과 같은 용접작업인 경우는 본 품을 증감한다.	[기계 설비]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1-3 비탈면 점검로 설치('02년 신설, '20, '25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⑥ '생략' ③ 본 품은 비탈경사 1:1.0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1:1.0초과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3%까지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3 비탈면 점검로 설치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⑥ '생략' ③ 본 품은 비탈경사 1:1.0이하를 기준한 것으로, 1:1.0초과인 경우에는 시공량을 43%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유지 관리]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2-15 잔디시비('22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 '생략' ② 현장조건, 살포조건에 따라 살포량이 다를 때는 본 품의 20%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1-2-15 잔디시비 - 본문 생략 - [주] ①,③ '생략' ② 현장조건, 살포조건에 따라 살포량이 다를 때는 본 품의 20%범위 내에서 증감한다.	[유지 관리]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3-1 콘크리트 균열 보수(표면처리공법)('21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⑥ '생략' ③ 균열폭은 10m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1-3-1 콘크리트 균열 보수(표면처리공법)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⑥ '생략' ③ 균열폭은 10m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유지 관리]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3-2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21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⑥ '생략' ③ 균열폭은 10m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1-3-2 콘크리트 균열 보수(주입공법)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⑥ '생략' ③ 균열폭은 10m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유지 관리]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3-3 콘크리트 균열 보수(패커주입공법)('21년 신설)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⑥ '생략' ③ 균열폭은 10m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1-3-3 콘크리트 균열 보수(패커주입공법)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⑥ '생략' ③ 균열폭은 10m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유지 관리]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3-4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21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 '생략' ② 균열폭은 10m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1-3-4 콘크리트 균열 보수(충전공법) - 본문 생략 - [주] ①,③~⑤ '생략' ② 균열폭은 10mm까지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균열의 폭이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유지 관리]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3-5 콘크리트 단면처리('21년 신설)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⑤ '생략'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건출) 두께는 1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1-3-5 콘크리트 단면처리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⑤ '생략'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건출) 두께는 1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유지 관리]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1-3-6 콘크리트 단면복구('21년 신설)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⑥ '생략'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파쇄) 두께는 5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할 수 있다.	1-3-6 콘크리트 단면복구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⑥ '생략' ③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파쇄) 두께는 50mm 이하를 기준하며, 보수 대상 표면의 두께나 형태가 다양하여 본 품에 준할 수 없을 때에는 적의 산출한다.	[유지 관리]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2-1-15 표면평탄작업 - 본문 생략 - [주] ①,③,④ '생략' ② 작업면적이 10㎡이하이고 작업개소가 분산된 소규모 포장 공사일 경우, 일당 시공량의 3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	2-1-15 표면평탄작업 - 본문 생략 - [주] ①,③,④ '생략' ② 작업면적이 10㎡이하이고 작업개소가 분산된 소규모 포장 공사일 경우, 일당 시공량의 30% 범위 내에서 감하여 적용한다.	[유지 관리]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2-1-16 현장가열 표층재생공법 - 본문 생략 - [주] ①~⑤,⑦,⑧ ‘생략’ ⑥ 예열연료는 현장노면온도 25℃를 기준한 것으로 온도 저하에 따라 50%까지 증가할 수 있다.	2-1-16 현장가열 표층재생공법 - 본문 생략 - [주] ①~⑤,⑦,⑧ ‘생략’ ⑥ 예열연료는 현장노면온도 25℃를 기준한 것으로 온도 저하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유지 관리]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2-2-12 도상갱환('11년 신설) 1. 가받침 설치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 ‘생략’ ③ 곡선구간(R=950미만)에서는 가받침 설치품을 5%까지 증할 수 있다.	2-2-12 도상갱환 1. 가받침 설치 - 본문 생략 - [주] ①,②,④ ‘생략’ ③ 곡선구간(R=950미만)에서는 가받침 설치품을 5%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유지 관리]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2-4-3 관세관(스크레이퍼+위터젯트 병행 방법)('10, '11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⑤ ‘생략’ ⑥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할 수 있다.	2-4-3 관세관(스크레이퍼+위터젯트 병행 방법) - 본문 생략 - [주] ①~⑤ ‘생략’ ⑥ 현장조건상 트럭탑재형 크레인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동일한 규격의 크레인(무한궤도, 타이어)을 적용한다.	[유지 관리]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3-2-10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 본문 생략 - [주] ①,③ ‘생략’ ② 소규모공사(개소당 작업면적 40㎡미만)인 경우는 장비 사용기간 및 품을 40% 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3-2-10 기존방수층 및 보호층 철거 - 본문 생략 - [주] ①,③ ‘생략’ ② 소규모공사(개소당 작업면적 40㎡미만)인 경우는 장비 사용기간 및 품을 40% 범위내에서 가산하여 적용한다.	[유지 관리]
1. 항목유형 - 보완 2. 개정내용 - 임의계상 의무적용 명시	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09년 신설, '11년 보완) - 본문 생략 - [주] ①,③~⑥ ‘생략’ ② 뿔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뿔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2-12 석면건축자재 해체 - 본문 생략 - [주] ①,③~⑥ ‘생략’ ② 뿔칠재의 경우, 콘크리트면에 부착된 석면 뿔칠재의 해체는 본 품의 2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유지 관리]